

레이와(令和)2년3월10일

출입국재류관리청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 
감염 확대 영향에 따른 재류자격  
인정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서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제반 정세를 고려  
해 볼때 통상은 「3개월간」 유효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당분간  
「6개월간」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되었습니다.

이와 같은 취급에 의해서 6개월 이내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는  
사증(비자) 발급신청 (주의) 이라던지 상륙신청을 하실때 사용  
하실 수 있게됩니다.

(주의) 사증 (비자) 발급신청은 재외공관에서 거행하실 필요가  
있습니다.

교부 받으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 
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 (비자) 발급신청시  
받아주는 기관 등이 「계속 해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  
류신청시의 활동 내용 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가능함」 이라  
는 것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